

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7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026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「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6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4,606백만원에서 4,740백만원으로 134백만원 증가함.
- 나.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과년도 실집행잔액(발생이자), 지역자활자금 반납처리 관련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금 및 지역자활자금의 1회 이월 사용 후 발생한 잔액 등 반영으로 「기타수입」 금액이 당초 154백만원에서 368백만원으로 214백만원 증가 및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「융자금회수(이자포함)」 금액이 당초 150백만원에서 140백만원으로 1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추가 수요 재조사 결과 「민간융자금」 지출금액이 당초 430백만원에서 714백만원으로 284백만원이 증가함.
- 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예치금」금액이 당초 4,225백만원에서 4,279백만원으로 54백만원 증가하였으며,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수요 재조사 결과 변동분 반영으로 정책사업비가 당초 998백만원에서 1,282백만원으로 284백만원 증가하여 28.5% 변경되었음.

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 B-A)	증감률 (C/A)
계	5,228	5,566	338	6.5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50	140	△10	△6.7
이자수입	318	318	0	0
기타수입	154	368	214	139.0
예치금회수	4,606	4,740	134	2.9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 B-A)	증감률 (C/A)		
계	5,228	5,566	338	6.5		
정책 사업 비	소 계	998	1,282	284	28.5	
	비용 사업	568	568	0	0	
	융자 성립 사업	430	714	284	66.0	
행정 운영 경비	기 경	본 비	5	5	0	0
재무 활동 비	예 치 금	4,225	4,279	54	1.3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자활지원과 김미경 (☎ 2133-7559)

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7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026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「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6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4,606백만원에서 4,740백만원으로 134백만원 증가함.
- 나.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과년도 실집행잔액(발생이자), 지역자활자금 반납처리 관련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금 및 지역자활자금의 1회 이월 사용 후 발생한 잔액 등 반영으로 「기타수입」 금액이 당초 154백만원에서 368백만원으로 214백만원 증가 및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「융자금회수(이자포함)」 금액이 당초 150백만원에서 140백만원으로 1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추가 수요 재조사 결과 「민간융자금」 지출금액이 당초 430백만원에서 714백만원으로 284백만원이 증가함.
- 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예치금」금액이 당초 4,225백만원에서 4,279백만원으로 54백만원 증가하였으며,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수요 재조사 결과 변동분 반영으로 정책사업비가 당초 998백만원에서 1,282백만원으로 284백만원 증가하여 28.5% 변경되었음.

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 B-A)	증감률 (C/A)
계	5,228	5,566	338	6.5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50	140	△10	△6.7
이자수입	318	318	0	0
기타수입	154	368	214	139.0
예치금회수	4,606	4,740	134	2.9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 B-A)	증감률 (C/A)	
계	5,228	5,566	338	6.5	
정책 사업 비	소 계	998	1,282	284	28.5
	비용 자 사 업	568	568	0	0
	용 자 사 성 업	430	714	284	66.0
행정 운영 경비	기 경 본 비	5	5	0	0
재무 활동 비	예 치 금	4,225	4,279	54	1.3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자활지원과 김미경 (☎ 2133-7559)